

2021년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1. 6. 15.(화요일), 10:30
-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박정인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140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

시정권고 심의

-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,181건(안건번호 제2021-63882호~64693호)
 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63882호~63884호는 ●●●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.
안건번호 제2021-63885호는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캡처하여 원저작물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게시한 사안으로, 원저작물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오히려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, 게시자를 보호해야 할 표현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.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,14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- 제2호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 - 주요내용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757개의 URL 정보에 관한 '구글'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(안건번호 제2021-6855호~7611호)
 - 회의결과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

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, 총 757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140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B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E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E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63882호~6388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63885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'◀◀◀◀◀'라는 설치형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에 '▷▷▷▷▷▷▷' 홍보영상의 캡처화면이 게시된 것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오진해 전문위원: 원저작물 영상을 보시면 개선과정을 먼저 제시하고,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역재생하고 있는 것인데, 심의대상 게시물은 역재생 부분을 악화 과정 취지로 모두 캡처하여 게시하고 있음.
- B 위원: 패러디로서 공정이용이 성립되려면 일단 원저작물이 유명한 작품이어야 하고, 해학과 풍자를 위하여 개작하여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.

- A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보다는 그냥 단순히 원저작물을 베낀 것에 불과함. 새로운 표현, 보호되는 표현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음. 패러디로 인정되려면 보호되는 표현이 존재해야 함. 원저작물을 어떤 의도로 패러디하는지가 보여야되는데 그러한 취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해 보아야 함.
- B 위원: '○○○○○○○○'처럼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 것으로 보임.
- 오진해 전문위원: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는데, 전문위원도 검토시 단순 복제로 보고 검토를 하였음.
- B 위원: 심의대상 사이트 '◀◀◀◀◀'는 설치형 블로그 형태의 개인 블로그 같은데, 광고가 붙어 있는지?
- 오진해 전문위원: 광고는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수익 모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B 위원: 각색 및 편집이 개입되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, 이용 분량이 캡처 사진 일곱장으로 굉장히 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보면 시정권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여지는 있음.
- 오진해 전문위원: 대량의 저작물을 폼으로 가져오는 개인 블로그들의 경우 이용자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는 없음. 다만 글의 수나 내

용을 보았을 때 다른 수익 모델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음.

- A 위원: 다른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임.

- 오진해 전문위원: 이용자 규모나 수익 모델에 대하여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. 그리고 설치형 블로그에 시정권고나 제재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보호원의 권한 문제이기도 함.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.

- B 위원: 권리자인 '▷▷▷▷▷▷▷▷'에서 사용하는 '□□□'라는 캐릭터가 있는데, 이 캐릭터가 문제가 되었다면 더욱 쉽게 저작권 문제로 볼 수 있었을 것임.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델로 등장한 인물을 놀리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고 있음.

- 오진해 전문위원: 모델은 실명과 얼굴이 모두 등장함. 해당 편집된 게시글은 △△△△ 같은 게시판들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취지로 많이 배포되어 있음.

- B 위원: 근데 신고인은 이 설치형 블로그를 어떻게 안 것인지?

- E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많이 게시되고 있고, 아이디로 보아 동일한 게시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많음. 민원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하나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인지?

- 오진해 전문위원: 그러함. 심의대상 게시물 하나만 신고하였음. ●●●와 같이 OSP에의 신고절차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를 하

고, 그것이 불가능한 곳을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보임.

- A 위원: 저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. 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의 성질상 좀 예외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음.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오랫동안 심의를 계속하면서 느낀 바 있고,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논의하며 달리 판단하여 오고 있음. 그러면 이번 안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- B 위원: 단순히 이용 내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남이 올리는 글마다 삭제해야 하는 건지, 파급력도 없는 게시물에 대하여 우리가 입을 막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.
- E 위원: 저는 다른 의견임. 비슷한 게시물들이 많고, 동일한 블로그 형태에 동일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많으므로 그 중 하나에만 시정권고해도 경고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해도 될 것 같음.
- A 위원: 가결 여부와 별도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.
- B 위원: 저도 가결 의견임.
- A 위원: 저도 가결 의견이지만,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는 기록을 회의록에 남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음. 패러디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결국 저작권 침해의 조각 사유가 되는 것인데, 이러한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.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정이용으로 보

아 시정권고를 부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전체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음. 제 생각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패러디물이 되려면 패러디가 요구하거나 노리는 바가 그 표현물 안에서 드러나야 함. 저 사람은 패러디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학자들끼리 모여서 패러디라고 판단해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됨. 표현의 의사의 목표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며, 그런 차원에서 추후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- B 위원: 영상 콘텐츠가 워낙 많아, 오히려 패러디한 작품이 살아남고 원작품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음.
- A 위원: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역주행을 견인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다양해서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, 시정권고와 관련한 기초적인 요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음.
- B 위원: 지난번 공공저작물인 영상물의 패러디 관련하여서는, 보호원이 시정권고 또는 삭제요청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부결되었음.
- A 위원: 본건과는 쟁점이 조금 달랐던 사안으로,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재산권 제한 관련 논점도 있었음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패러디로서 공정이용의 인정을 심의에서 다루기 위하여는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 일단 회의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음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

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63886호~6469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음악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
(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(음악 '(음악)물 (가수: 이적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63915호 '(음악)물 (가수: 이적)'는 발매된 앨범 '유명가수전 Part 6'에 수록된 음악으로 웹하드에서 190포인트에 판매 중임.

(영화 '(영화)큰엄마의 미친붕고 (2020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64153호 '(영화)큰엄마의 미친붕고 (2020)'는 2021. 1. 21. 개봉한 한국 영화로 밴드에서 전송 중임.

(영화 '(영화)컨저링 3: 악마가 시켰다 (2021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64489호 '(영화)컨저링 3: 악마가 시켰다 (2021)'는 2021. 6. 3. 개봉한 웹하드에서 181포인트에 판매 중임.
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,14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-63886호~6469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- B, E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63886호~6469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안전번호 제2021-63882호~638853호, 제2021-63885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63886호~6469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o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부터 16쪽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.

(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6855호~7611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6. 22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